

FTA BRIEF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과 전망

Vol. 07
September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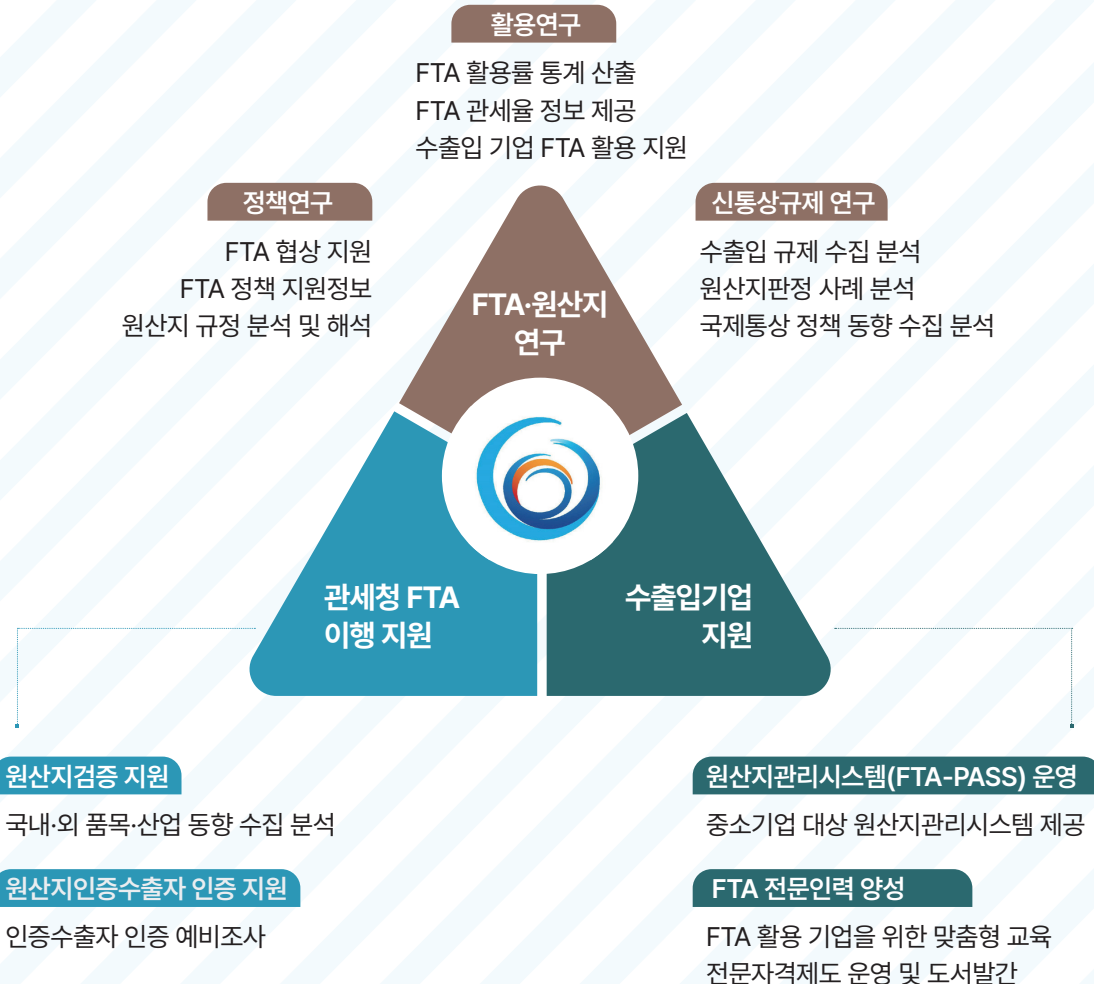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 사진 출처 : Freepik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상호관세 적용 제외 대상품목 공개

- ☑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과 추가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하였다.
- ☑ 대상 품목은 미국 정부가 9월 8일(미 동부 시간 00:01)부터 상호관세 적용을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수출기업이 해당 품목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이다.
 - 품목번호는 7단위 이하의 경우 각국이 달리 운영하고 있어, 동일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해당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목록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이번 조치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은 신규 핵심 광물과 유기화합물,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되었고, 해당 품목들은 수출 시 15% 상호관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은 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의 광물과 리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의 유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
- ☑ 반면, 기존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되어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 ☑ 추가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 미 품목관세 부과 대상 전체 연계표를 품목군별(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자동차 부품)로 구분하고 HSK순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 해당 자료는 (1) 한국원산지정보원 ▶ 발간자료 ▶ 신통상 정보 ▶ 동향 정보 또는 FTA 포털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동향과 전망

- EU CBAM은 2023. 10월 ~ 2025. 12월간 전환 기간 후 2026년 1월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 2025년 2월에 공개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내 CBAM 개정안에는 일부 품목(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연간 누적 총 수입량 50톤 이하 수입업자 적용 면제, 배출량 및 기지불 탄소가격 기본값 제공, CBAM 인증서 제출 / 환매 / 취소 기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개정안 확정에 따른 대응 전략 구체화 필요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원산지 판정 시스템 FTA-PASS를 활용하여 EU CBAM 대응 지원 예정

[글_구준희 한국원산지정보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1. 들어가며



EU는 파리협정의 최종 목표인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하여 2019년에 그린딜 (Green deal)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차 목표로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5% 감축'을 설정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Fit for 55'라는 입법 패키지를 통하여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기후법(Climate law) 등을 도입하였다.

이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BAM은 EU 역내 수입자가 EU 역외에서 생산된 특정 제품¹⁾을 EU 역내로 수입할 때, 해당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역내 동일 제품의 평균 배출량을 초과하면, 배출량 초과분과 EU 탄소 가격을 곱한 금액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2023년 10월 ~ 2025년 12월 까지 전환 기간(Transitional phase)을 두고 있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10월 이후 전환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CBAM 적용 면제 기준 당초 적용 면제기준²⁾, 배출량 MRV³⁾ 체계 마련,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기지급 탄소가격) 인정 범위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으나, 기업들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 수출 감소 및 무역 분쟁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EU CBAM 동향과 우리 기업이 대응하여야 할 이슈를 검토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2) 당초 적용 면제기준이 수입금액 기준 '선적당 150 유로 이하'였으나, 기업들의 반발로 인하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를 '연간 총 50톤 미만'으로 수입하는 자에게 이를 면제하는 CBAM 개정안이 2025년 2월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Omnibus Package)를 통해 등장하였다.

3)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을 의미한다.

2. 국제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대응 동향



18~19세기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환경오염 가속화 및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응하고자 전 세계 국가들이 상호 합의하여 1992년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을 채택하고 이를 1994년에 발효하였다.

UNFCCC 당사국들은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UNFCCC 당사국총회 (Thir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에서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를 채택하고 2005년에 이를 발효하였지만, 개발도상국은 적용 제외라는 점과 미국의 비준 거부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부족하였다. 이에 당사국들은 여러 차례의 당사국총회를 거친 끝에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2016년 11월에 이를 발효하였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통하여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합의하였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 2도 아래 억제 및 1.5도를 넘지 않게 제한하자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며⁴⁾, 이를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이 0이 되는 탄소 중립이라는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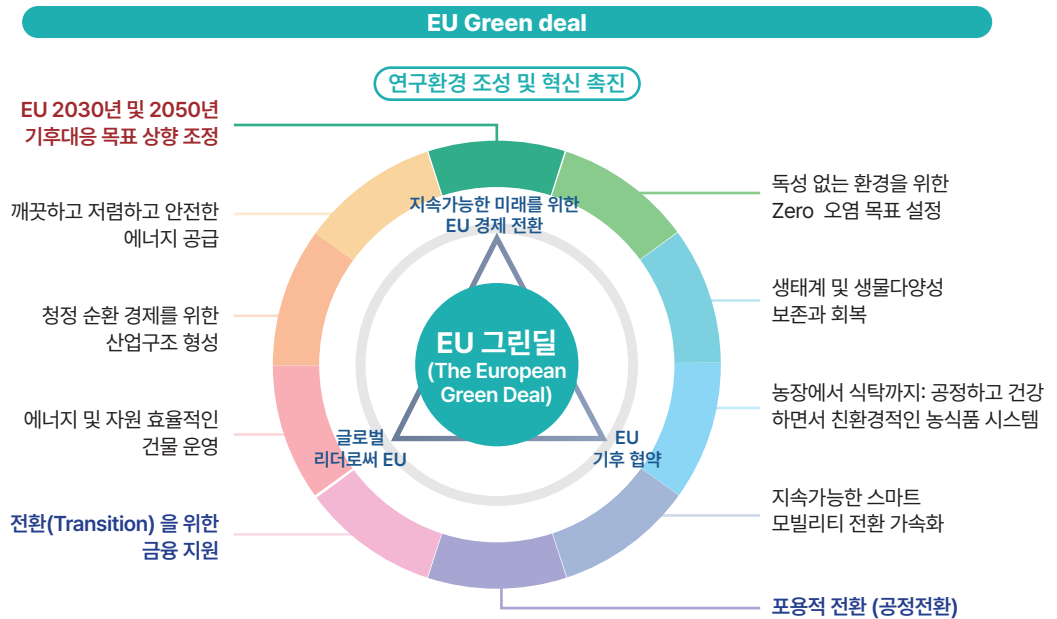
이후 여러 차례의 당사국총회를 거쳐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ong-Term Least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LT-LEDS) 수립, 이들에 대한 5년 단위의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합의하였고, 시장메커니즘(Market mechanism)에 기반한 국제 탄소 시장을 조성하여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EU는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전 세계 최초로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를 도입하였으며⁵⁾, 파리협정 체제에서는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EU 그린딜(EU Green deal)을 발표하였다. 그린딜 추진 방안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를 감축하는 'Fit for 55' 입법 패키지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EU ETS 부문 확대, EU CBAM 도입, 에너지 효율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4)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기후변화 전망과 관련하여 총 1~6차 보고서를 발행하였다. 1차 보고서(1990년)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근거를 제공하였고, 2차 보고서(1995년)는 교토의정서 채택 근거를 제공하였으며, 5차 보고서(2014년)를 통해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 2도 이하로 억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파리협정 채택 근거를 제공하였다. 5차 보고서 이후 특별 보고서(IPCC Special report : Global Warming of 1.5°C, 2018년)를 발행하여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아래로 억제하여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실현하려면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 및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후 6차 보고서(2023년)를 통해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지 않으면 기후재앙과 같은 심각한 결과가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5)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을 부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상한선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이 배출량 상한선보다 많이 배출한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탄소배출권)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 EU는 2005년에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하였다.

EU Green deal과 Fit for 55 주요 내용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Fit for 55 입법 패키지

탄소 가격 결정	탄소 감축 목표 설정	탄소 배출 규정 강화
항공부문 배출권거래제 강화	노력분담규정 개정	승용차 및 승합차 탄소배출규제 기준 강화
배출권거래제 부문 확대 (항공, 해운, 수송, 건물)	토지이용, 토지이용변화 및 산림규정 (LULUCF) 개정	대체연료인프라규정 개정
에너지 조세 지침 개정	재생에너지지침 개정	항공운송연료 기준 마련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에너지효율지침 개정	해상운송연료 기준 마련

지원 대책

사회 기후 기금(Social Climate Fund) 신설

◎ 자료 출처 : EU Commission(Communication on The European Green Deal), KIEP
세계경제 포커스(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개요와 동향



EU CBAM은 EU 그린딜(Green deal) 추진 및 EU 배출권거래제(EU ETS)⁶⁾ 보완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EU 역내 기업들은 배출권거래제를 통하여 탄소가격을 부담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반면, EU 역외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를 도입 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적용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6)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업체에게 1차년도(2005~2007)에는 대부분 무상으로 탄소배출권을 할당하였으나, 2차년도(2008~2012)에 전체 배출량의 90%를 무상할당하였다. 3차년도(2013~2020)에는 배출량의 약 57%를 경매에 의하여 유상으로 할당하고 43%는 무상으로 할당하였으며, 4차년도(2021~2030)부터는 3차년도와 유사한 할당 수준을 유지하면서 CBAM 적용 대상 부문에 한하여 무상할당을 2026년~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EU 역내 기업에게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이 점차 줄어들수록 유상으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므로, CBAM 인증서 구매 비중도 그에 따라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즉, EU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과 EU CBAM 인증서 구매량은 반비례한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EU 기업이 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EU 역외에서 생산한 가격이 저렴하고 탄소 집약적인 제품을 수입하는 ‘탄소누출(Carbon Leakage)’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탄소누출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EU는 CBAM을 도입하였으며, 적용 대상 제품은 EU 역외에서 생산된 6가지 제품(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이다.

CBAM 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하여 EU 역내로 수출하는 기업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정보를 CBAM 커뮤니케이션 양식 (Communication template)⁷⁾을 이용하여 EU 역내 수입자인 신고인에게 제출하면, 신고인은 CBAM 보고서(CBAM Report)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CBAM 시범 적용 기간인 ‘전환 기간(Transitional phase)’⁸⁾ 동안 수출기업으로부터 CBAM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통하여 제공받은 CBAM 제품 생산 공정, 제품 코드(CN)⁹⁾ 고유 내재배출량¹⁰⁾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CBAM 보고서를 작성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CBAM이 시행되는 ‘확정 기간(Definitive regime)’¹¹⁾에는 CBAM 신고서, 배출량 초과분에 EU 탄소 가격¹²⁾(기저불 탄소가격 반영)을 곱한 가격만큼의 CBAM 인증서, 배출량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신고인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관할당국(National Competent Authorities, NCAs)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배출량 초과분에 대한 CBAM 인증서 구매량은 고유 내재배출량과 기저불 탄소가격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유 내 재배출량은 제품 생산 공정·연료 연소·열 소비 등으로 인한 배출량, 전력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 및 전구물질 배출량¹³⁾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가진다.

기저불 탄소가격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불한 온실가스 가격으로, 원산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별 탄소가격제(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유형 및 구조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탄소가격이 상이하기 때문이다.¹⁴⁾

7) EU 수입업자(신고인)가 수입 제품에 대한 배출량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품 수출 기업 등으로부터 제공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양식으로, CBAM 전환 기간 동안 사용되는 공식 양식이다.

8) 전환 기간(Transitional phase) : 2023.10.01 ~ 2025.12.31

9) CN(Combined Nomenclature) 코드는 EU의 상품 분류 코드로, EU와 국가가 상품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HS코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등을 통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10) 수입 제품에 내재된 배출량으로 Scope 1(직접 배출량), Scope 2(간접배출량)을 포함하는데, Scope 1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며, Scope 2는 제품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열(Heat)과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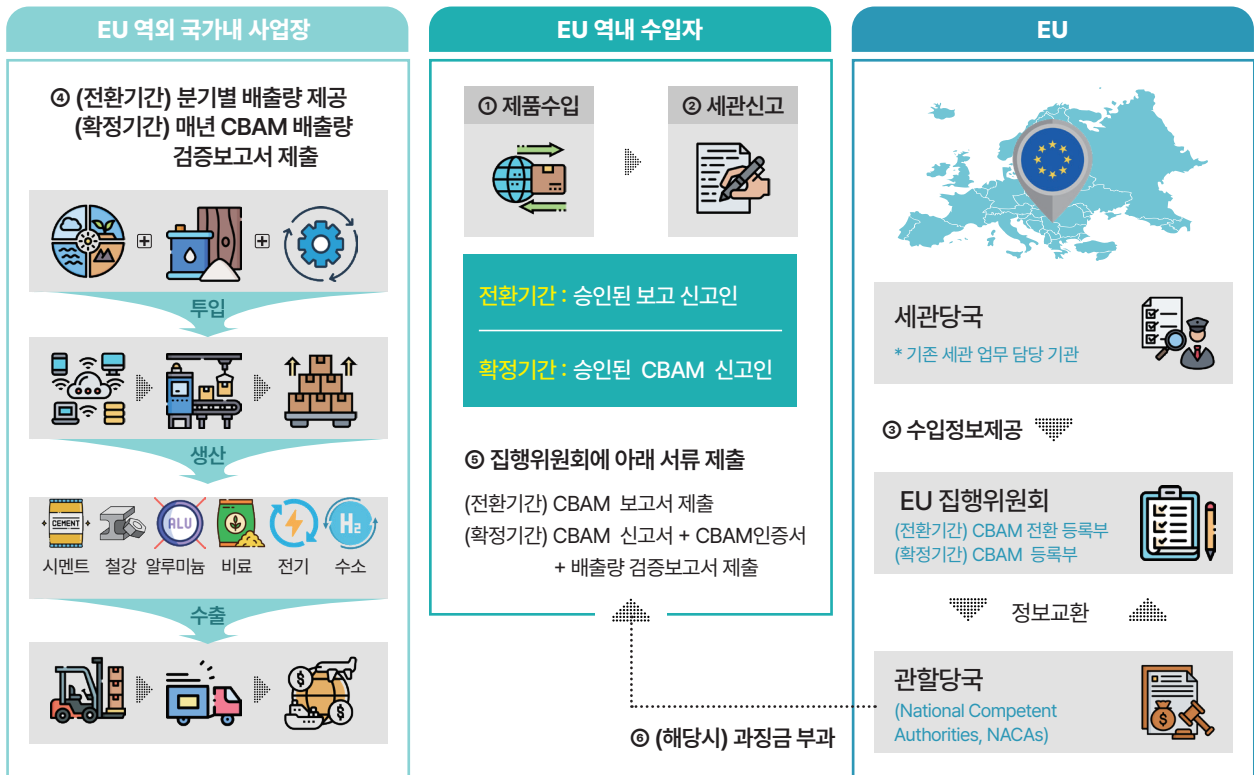
11) 확정 기간(Definitive regime) : 2026.01 이후가 될 예정이다.

12) EU CBAM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탄소 가격 기준으로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ETS)의 탄소배출권 주간 평균 경매 가격을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3) 다른 화합물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화합물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시멘트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클링커(Clinker)가 대표적이며, 클링커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CBAM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 범위에 포함된다.

14)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우리나라 탄소 관련 세금, 부담금 제도중 어떤 것을 기저불 탄소가격으로 인정할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에 지불한 탄소가격을 기저불 탄소가격을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옴니버스 입법 패키지를 통하여 국가별 기저불 탄소가격에 대한 기본값(Default Carbon Price)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EU CBAM 구조와 CBAM 인증서 수량 산출식



CBAM 인증서 수량식

$$\left(\text{고유 내재 배출량} - \left\{ \text{CBAM 벤치마크} \times \text{CBAM 계수} \right\} - \left\{ \left(\text{기저불 탄소가격} \times \text{고유 내재 배출량} \right) \div \text{CBAM 인증서 가격} \right\} \right) \times \text{수입량} = \text{구매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량}$$

$(\text{tCO}_2\text{eq} / \text{t}_{\text{goods}})$ $(\text{tCO}_2\text{eq} / \text{t}_{\text{goods}})$ (%) $(\text{EUR} / \text{tCO}_2\text{eq})$ $(\text{tCO}_2\text{eq} / \text{t}_{\text{goods}})$ $(\text{EUR} / \text{tCO}_2\text{eq})$ $(\text{t}_{\text{goods}})$

- 고유 내재배출량 : 수출 기업 제품당 배출량(생산중 직접배출량 + 간접배출량 + 전구물질 배출량)
- 기저불 탄소가격 : 탄소가격제(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를 통하여 지불한 탄소가격
- CBMA 계수 : EU ETS 무상할당 감축율
- CBMA 벤치마크 : 2025년 기준 EU 역내 생산 제품당 EU ETS 무상할당량

© 자료 출처 : (EU CBAM 구조) 2025년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발표자료 및 2025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 리더십 아카데미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Flaticon (EU 인증서 수량 산출식) EU CBAM 중소·중견기업 대응 매뉴얼

2023~2025년은 EU CBAM 전환 기간(Transitional Period)에 해당하여 배출량 초과분에 대한 보고만 실시하고 별도로 CBAM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나, 2026년부터 확정 기간(Definitive regime)으로 전환되어 초과분에 대한 CBAM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U CBAM 도입 경과, 전환 기간과 확정 기간 관련 세부 사항

일정	요약	주요 내용
2019. 12	EU 그린딜(Green deal) 발표	2050년 탄소중립 달성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U 경제전환
2021. 07	Fit for 55 발표	- EU 그린딜 추진 세부방안 -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
2023. 05	CBAM 규정 발효 ((EU) 2023/956)	CBAM 적용범위, 의무와 권리, 관할당국, 인증서, 집행, 보고 및 검토, EU ETS와의 조정 등
2023.08	CBAM 전환기간 이행규정 확정 ((EU) 2023/1773)	2023.06 : 세부 이행규정(안) 공개 2023.07 : 세부 이행규정(안) 수정
2023.10~2025.12.31	CBAM 전환기간 시작	2023년 4분기에 대한 1차 보고서 제출 - 배출량 초과분에 대한 보고의무만 주어 지고 실제 CBAM 인증서 구매 필요 X
2025.02.26.	CBAM 개정안 발표 (Omnibus Package I 발표)	CBAM 적용 면제 기준, CBAM 배출량 산정 방법 및 검증 대상, CBAM 인증서 제출·환매·취소 기간 변경 등 개정
2025.09.29	CBAM 개정안 최종 확정	- EU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개정안 채택 (Adopt) 및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 최종 승인을 거쳐 개정안 확정 2025년 10월에 EU 법률 관보 게재 및 발효
2026.01~	CBAM 확정기간 시작	- 검증 및 CBAM 인증서 구매 시작 - 적용범위 확대 가능성 존재



구분		전환 기간 (Transitional phase)	확정 기간 (Definitive regime)
기간		2023.10~2025.12	2026.1~
대상품목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전환 기간 품목 (확대 가능성 존재)
의무	① 모니터링	EU CBAM 방법론 활용 유예 전환 기간 기본값 보고(~2024.7), NON-EU 방법(~2024.12), 추정값(~2025.12)	EU CBAM 방법론 및 확정 기간 기본값 활용보고
	② 보고&검증	분기별로 CBAM 보고서 제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연 1회 신고(CBAM 신고서+ 검증보고서+인증서)
과징금	① 법적 근거	전환 기간 이행규정 제16조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CBAM 규정 제26조 (Regulation (EU) 2023/956)
	② 부과기준	- CBAM 보고서 제출 의무 미준수 또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보고서 제출 - 관할당국의 CBAM 보고서 시정 조치 미이행	CBAM 인증서를 지정한 기간 내 미제출한 경우
	③ 부과금액	10~50 EUR/tCO₂eq (EU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증가) - 보고 기한 6개월 이상 초과 또는 2회 연속 부정확한 보고 제출 시 더 높은 과징금 부과 가능	- EU-ETS의 초과배출 과징금과 동일(100 EUR/tCO₂eq) (EU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증가) - 과징금과 별도로 CBAM 인증서 또한 제출

◎ 자료 출처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2025.05),
KOTRA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Q&A)

4.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우리나라의 對EU 수출액 중 CBAM 적용 대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6~7%이며, 그중 철강(90%)과 알루미늄(8~10%)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붙임1).

철강과 알루미늄의 對EU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하여야 할 탄소 가격(EU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감소에 따른 CBAM 구매량 증감과 기지불 탄소 가격 인정 등¹⁵, CBAM 대응 인프라 구축비용(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보고·검증, CBAM 대응 인력 양성 등) 및 CBAM 적용 대상 판단을 위한 제품의 CN 코드 분류 부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⁶⁾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 부문은 對EU 수출 규모가 크지 않거나 거의 없지만, 국제 정세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조기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CBAM 적용 대상 기업 유형은 크게 ① CBAM 대상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EU로 직접 수출 및 통관하는 기업, ② EU 수입 기업에게 수출하는 기업, ③ EU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전구물질 또는 CBAM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 등으로 구분된다.

①번은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만들고 EU로 수출해서 EU 내 통관/수입까지 모두 직접 책임지는 사례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A기업은 EU 현지 법인(자회사)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여 EU로 수출한 후, EU 내 통관 및 수입까지 모두 처리하는 경우이다.

②번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 EU 수입 기업에게 수출하는 사례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EU 수입 기업에게 수출하는 것만 담당하고, EU 내 최종 통관 및 수입은 EU 수입 기업이 담당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A기업이 철강 등을 생산하여 EU 내 수입 기업에게 수출하면, 이후 EU 내 통관 및 수입 절차는 EU 수입 기업이 처리하는 것이다.

③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국내 다른 기업에게 중간재로 공급하면, 해당 기업이 이를 활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EU에 수출하는 사례이다. EU로 직접 수출하지 않아도 최종적으로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A기업이 철강으로 만든 부품을 우리나라 B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고, B 자동차 회사가 A기업 부품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만들어 EU에 수출하면, A기업 부품도 CBAM 적용 대상이 된다.

15) EU는 탄소수출 방지를 위하여 EU 배출권거래제의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무상할당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CBAM이 시행되는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할당을 줄여나갈 예정이며, 그에 따라 CBAM 인증서 구매 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6) <https://tongsangnews.kr/webzine/202405/2024050380225.html>

①번처럼 CBAM 대상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EU로 직접 수출하는 기업들은 대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자체적으로 CBAM 대응이 가능하지만, ②번처럼 동일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되 CBAM 신고인에게 수출하거나 국내외 유통망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CBAM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또는 ③번처럼 CBAM 상품(부품 등) 또는 전구물질(Precursor) 등을 공급하는 기업 등은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높아 CBAM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외 EU로 수출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중간 가공 공정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로부터 중간 가공 공정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기업들도 연료 및 전력 사용, 기계 가동률 등에 기초하여 배출량을 직접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추후 배출량 검증 진행과 배출량 데이터 신뢰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CBAM 적용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EU에서 제공하는 CBAM 커뮤니케이션 양식(Communication Template) 등을 활용하여 EU 역내 수입 기업에게 수출하는 제품에 대한 배출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EU 역내 수입 기업은 이를 토대로 CBAM 보고서를 작성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EU는 수출기업들이 작성·제출한 CBAM 커뮤니케이션 양식(Communication Template)을 토대로 EU 역내 수입 기업이 CBAM 보고서를 제출하는 구조는 데이터의 신뢰성·일관성 확보, 제3자 검증(Verification) 적용, 세관 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CBAM 전산 보고 체계인 'EU CBAM Operator portal(O3CI)'을 도입하였는데, 2026년부터 시작되는 확정 기간(Definitive regime)에는 포털을 통한 보고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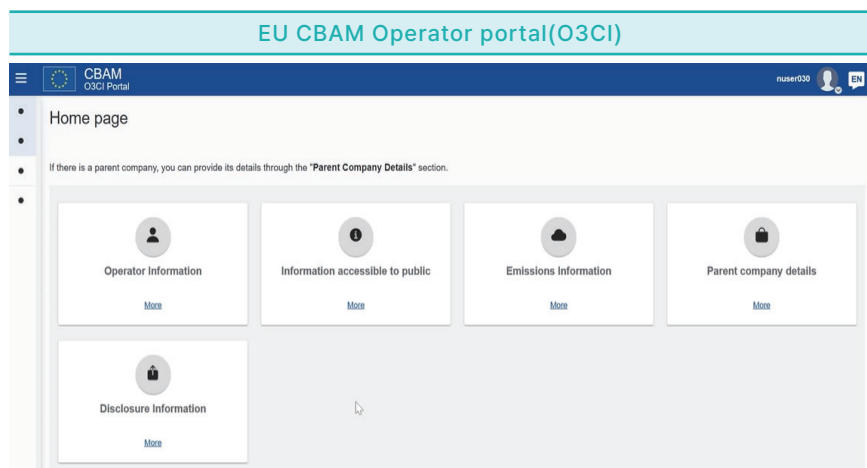
EU CBAM 적용 대상 기업 유형 및 유형별 CBAM 대응

구분				
		유형1 수출 + EU 수입 통관 기업	유형2 수출기업	유형3 EU 간접 수출 기업
면제조항		EU 역내 법인이 수입업자 역할 수행 또는 한국 수출과 EU 수입 통관 모두 수행하는 기업	EU 수입업자에게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	유형1, 유형2의 기업에게 전구물질 또는 CBAM 상품(부품 등)을 판매하는 기업
업무	직접 생산	○ or X	○ or X	○
	수출 신고	○	○	○
	수입 신고	○	X	X

뒷장 계속 ▼

17) 전환 기간(Transitional phase)동안 CBAM 커뮤니케이션 양식 (Communication template)에 기반한 CBAM 보고 체계를 유지하면서 Operator portal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확정 기간(Definition regime)부터는 CBAM 커뮤니케이션 양식(Communication template)에 있는 데이터가 아닌 Operator portal에 입력된 제3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데이터만을 인정할 예정이다.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수출 + EU 수입 통관 기업	수출기업	EU 간접 수출 기업
CBAM 대응	[전환 기간] - CBAM 보고서를 CBAM 전환 등록부에 제출 [확정 기간] - CBAM 신고서와 검증 보고서, CBAM 인증서를 CBAM 등록부에 제출	배출량 데이터 통지 또는 CBAM Operator 포털에 정보입력 (CBAM Operator 포털은 단순 무역 등 수출업자가 아닌 제3국 생산자만 사용 가능)	사업장 정보, 고유 내재 배출량 정보, 기지불 탄소 가격 정보를 구매기업에 제공 (정보 제공은 기업의 자율이지만, 미제공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클레임 발생 가능성 있음)
지정양식	CBAM 등록부상 User Interface에 직접 입력 또는 XML format 업로드	배출량 데이터 통지는 Communication Template이 있으나 의무 사용이 아니며, CBAM Operator는 포털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제공	-



© 자료 출처 : 2025년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발표자료, EU 세관 당국(Customs-taxation)

2025년 2월, EU는 옴니버스 입법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하면서, CBAM 적용 면제 기준 변경, CBAM 배출량 산정 방법 및 검증 대상 변경, CBAM 인증서 제출·환매·취소 기간 변경 등을 담은 CBAM 개정안을 공개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4개 주요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을 50톤 미만으로 수입하는 기업에게 CBAM 적용 면제, 확정 기간(2026년 1월)부터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기본값(Default value)을 조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 기지불 탄소가격 산정 시 사업자가 직접 산정하는 것의 기본값(Default value) 선택 허용, CBAM 인증서 제출/환매/취소 기간 조정을 통한 기업의 CBAM 대응 기간 확보 지원 등이 있다.

EU는 CBAM 개정안 발표 후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2025년 9월에 EU 의회(European Parliament)의 채택(Adopt)¹⁸⁾ 및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의 승인¹⁹⁾ 을 거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였다.

18) EU 의회 언론 보도 자료(CBAM: Parliament adopts simplifications to the EU carbon leakage instrument, 2025.09.10.)

19) EU 이사회 언론 보도 자료(CBAM: Council signs off simplification to the EU carbon leakage instrument, 2025.09.29.)

EU 옴니버스 입법 패키지(Omnibus package) 내 EU CBAM 관련 주요 내용

항목	원안	개정안(확정)
면제조항	탄소화물당 내재가치 150 EUR 미만은 면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연간 50톤 이하 수입업자 면제 적용 (전력 및 수소는 소수 대규모 수입자가 시장을 점유하여 면제 제외)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본값 사용	- 확정 기간 기본값 사용 시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 사용 불가능에 대한 이유와 증거 제시 필요 - 기본값 결정 방식: EU 역내 배출 효율이 가장 낮은 시설 평균값	- 확정 기간 이후 기본값 조건 없이 사용 가능 - 기본값 결정 방식: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면 EU 역내 배출 강도가 가장 높은 상위 10개국 수출국의 평균값 사용 허용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본값 검증	실제 고유 내재배출량과 기본값 모두 검증을 거쳐야 함	기본값을 사용할 경우 검증 제외
배출량 산정 경계	CBAM 상품 생산 공정 전체	- EU ETS에서 다루지 않는 후속 산업(Downstream) 공정은 시스템 경계에서 제외 - EU ETS 적용 전구체 생산의 배출량은 경계에서 제외
기저불 탄소 가격	실제 지불한 탄소 가격을 토대로 사업자가 직접 가격을 산정하여 제출 (원산지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비용 차감)	- 실제 지불한 탄소 가격과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에서 제시할 국가별 기본 탄소 가격(Default Carbon Price) 중 택일 가능 2027년까지 제3국별 기본 탄소가격 마련 - 원산지 국가 이외 제3국에서 지불한 탄소비용도 차감 가능
CBAM 신고서 제출기한	차년도 5월 31일	차년도 9월 30일
CBAM 인증서 판매	2026년 1월부터 판매	공동 중앙 플랫폼(Common Central Platform)에서 2027년 2월부터 판매
CBAM 인증서 제출	- 차년도 5월 31일까지 제출 - 각 분기 말까지 해당 연초부터 수입한 상품의 내재배출량 80% 이상 해당하는 CBAM 인증서 보유	- 차년도 9월 30일까지 제출 - 각 분기 말까지 해당 연초부터 수입한 상품의 내재배출량 50% 이상 해당하는 CBAM 인증서 보유
CBAM 인증서 환매	- 매년 6월 30일까지 환매 가능 - 환매가능수량: 전년도 구매 인증서 수량의 1/3까지 가능	- 매년 10월 31일까지 환매 가능 - 환매가능수량: 해당연도에 제출할 CBAM 인증서 수량만큼 환매 가능
CBAM 인증서 취소	전전년도에 구매한 인증서는 매년 7월 1일까지 취소 가능	전전년도에 구매한 인증서는 매년 11월 1일까지 취소 가능 (2026년 수입분은 예외적으로 2027년 11월 1일 말소)
최종공정 및 전구물질 생산중 발생하는 내재배출량	최종공정과 전구물질 생산에서 발생하는 내재배출량 대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필요	EU ETS 적용을 받지 않는 별도 시설 내 최종공정은 내재배출량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되 동일 시설 내 통합 공정은 예외로 간주

◎ 자료 출처: EU 옴니버스 패키지 내 CBAM 규정 개정안²⁰⁾, EU 옴니버스 패키지 CBAM 규정 개정안 실무반 작업문서²¹⁾, 2025년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 발표자료, KOTRA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안 최종 승인 주요 내용과 전망, KOTRA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EU 탄소국경조정제도 Q&A)

* EU 옴니버스 패키지 내 CBAM 규정 개정안(확정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확정 기간(Definitive regime) 도입 전까지 EU 기구(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및 우리나라 정부 기관 자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20) Regulation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2025.9.29.)

21)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Accompanying the document(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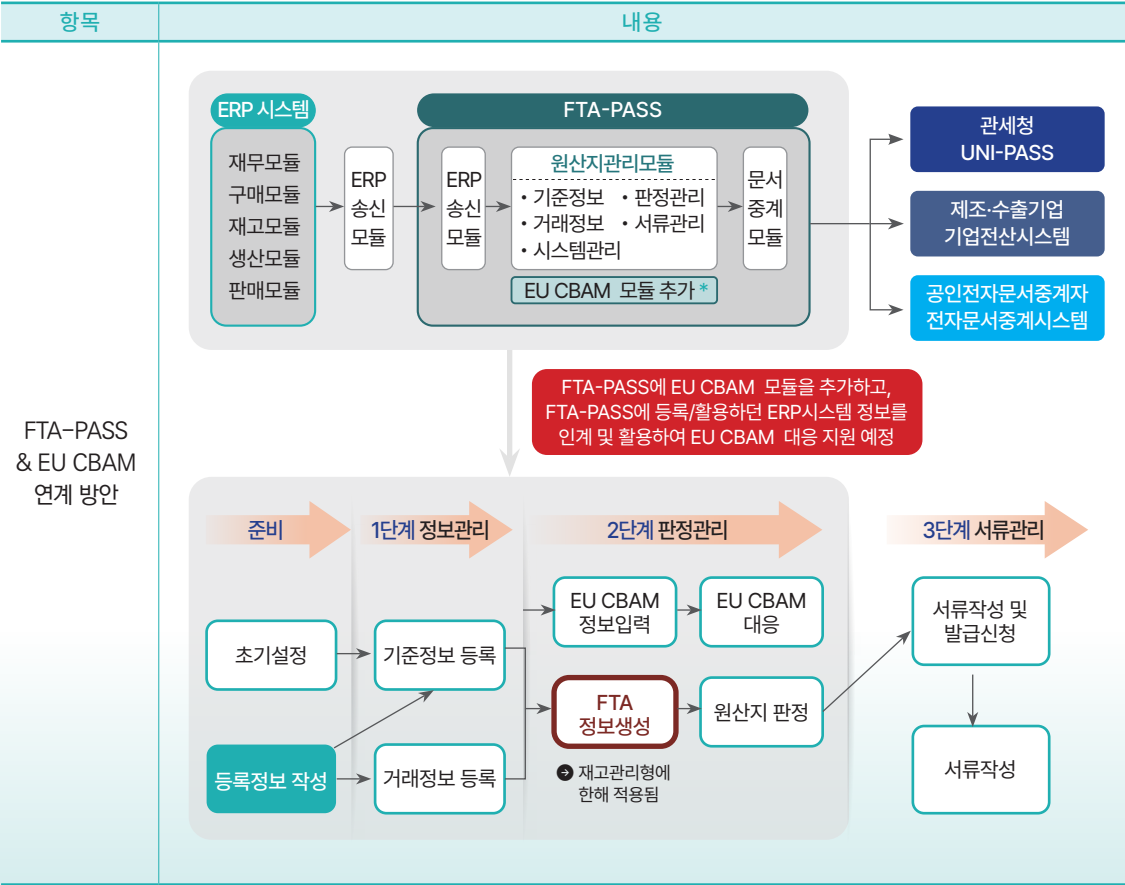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 발표 후, 우리나라 정부는 2025년에 3차례(3월, 6월, 7월)의 부처 간 합동 설명회를 통하여 기업들에 EU CBAM 최신 동향과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향을 소개하였다.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주요 개정사항과 이슈를 분석하고, 관련 정부 지원 사업(붙임2)을 지원하도록 안내하여 기업들이 CBAM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중간재 가공·유통 등을 담당하는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배출량 산정을 위한 MRV 인프라 구축, 배출량 산정 방법론 이해 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자체 대응 역량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 외 CBAM 적용 대상 판단을 위한 제품의 CN 코드 분류 등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하여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 FTA-PASS²²⁾에 2025년 하반기부터 EU CBAM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FTA-PASS를 활용하여 CN 코드 분류 지원뿐만 아니라, FTA-PASS와 연계된 기업의 ERP 시스템 내 경영정보와 생산정보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CBAM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FTA-PASS 및 EU CBAM 연계 구조



© 자료 출처 : FTA-PASS 홈페이지 및 한국원산지정보원 내부 자료 활용

5. 마무리하며



EU CBAM 전환 기간(Transitional period)이 끝나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가 점검하고 준비하여야 할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으며,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통상환경으로 인하여 CBAM이 확정 기간(Definitive regime)에 들어선 이후에도 안착 및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CBAM 도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통상환경을 조성하려면 정부와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관련 정부 부처는 EU CBAM 동향을 최신화하여 기업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기업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발굴·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된다면, 향후 영국 등 다른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여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무역·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2) FTA-PASS는 기업이 FTA 원산지 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장치로 관세청의 관리감독 하에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설정, 정보관리, 원산지 판정, 서류관리 등 원산지 관리절차를 구현하고 있으며, 거래기업간 원산지 증빙서류를 유통할 수 있다.

(단위 : USD 1,000)

부문	CN코드	HS코드	2022	2023	2024
철강	7201	7201	4		-
	7203	7203	6	-	-
	7205	7205	160	251	89
	7206	7206	-	7	2
	7207	7207	121,900	6,922	38,606
	7208	7208	1,015,900	1,083,520	1,120,884
	7209	7209	287,996	252,993	250,036
	7210	7210	1,180,936	1,092,647	1,066,686
	7211	7211	6,452	7,306	8,152
	7212	7212	20,386	12,997	12,004
	7213	7213	28,926	22,071	15,298
	7214	7214	18,896	13,204	13,561
	7215	7215	1,871	757	668
	7216	7216	17,520	13,290	33,676
	7217	7217	28,307	28,085	18,302
	7219	7219	331,138	308,250	393,439
	7220	7220	105,507	80,210	77,830
	7221	7221	33,318	17,988	21,211
	7222	7222	912	1,917	290
	7223	7223	100,559	63,551	68,562
	7225	7225	280,398	228,117	231,784
	7226	7226	471	1,425	1,392
	7227	7227	283	5,854	4,420
	7228	7228	67,731	79,968	45,860
	7229	7229	21,996	25,098	25,960
	7301	7301	382	289	-
	7302	7302	2,581	2,910	2,557
	7303	7303	169	13	91
	7304	7304	54,781	45,384	31,060
	7305	7305	16,635	9,600	14,912
	7306	7306	50,914	47,853	43,907
	7307	7307	51,001	61,966	49,391
	7308	7308	128,897	192,631	184,785
	7309	7309	99,656	38,515	30,090
	7310	7310	18,903	10,414	8,011
	7311	7311	3,351	3,206	3,360

	7318	7318	158,570	178,510	180,912
	7326	7326	161,404	189,094	175,546
소계			4,418,817	4,126,813	4,173,334
알루미늄	7601	7601	162,782	52,168	63,171
	7603	7603	-	3	51
	7604	7604	46,425	39,804	35,910
	7605	7605	1,256	1,059	1,863
	7606	7606	114,140	79,334	91,689
	7607	7607	126,122	128,046	112,636
	7608	7608	2,861	2,286	2,809
	7609	7609	2,431	2,332	2,712
	7610	7610	9,799	11,908	8,571
	7611	7611	1,374	5,383	1,545
	7612	7612	4,072	4,352	3,202
	7613	7613	2,816	1,351	988
	7614	7614	13,466	9,707	10,497
	7616	7616	50,503	55,735	49,042
소계			538,047	393,468	384,686
비료	2808	2808	-	-	1,712
	2814	2814	278	285	189
	3102	3102	5,150	3,926	7
	3105	3105	14	4,529	48
소계			5,442	8,740	1,956
시멘트	2507.00.80	2507	11	-	-
	2523.10.00	252310	-	-	-
	2523.21.00	252321	-	-	-
	2523.29.00	252329	-	-	1
	2523.30.00	252330	-	-	-
	2523.90.00	252390	-	-	-
소계			11	0	1
전기	2716.00.00	271600	-	-	-
수소	2804.10.00	280410	1	2	2
총계(A)			4,962,318	4,529,023	4,559,979
EU 수출총액(B)			68,072,166	68,188,372	68,080,301
비중(A/B, %)			7.2	6.6	6.7

자료 : 한국무역협회 K-Stat, 관세법령정보포털, KOTRA(EU,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정안 최종 승인, 주요 내용과 전망), EU 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2024.05.30.), 한국환경공단 알기쉽게 풀어쓰는 CBAM 해설서(2025.05.21.)

*시멘트 전기,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은 가독성을 위하여 4자리 CN코드 상품만 명시함

* : 각 품목 내 1~5위 수출액 품목 표시

부처	사업명	내용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CBAM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및 검증 지원 (지원한도) 컨설팅 및 검증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ESG 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지원내용) 중소기업이 CBAM 대응을 위해 필요한 교육,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컨설팅 및 검증 지원 (지원한도) 컨설팅 및 검증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90%,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대상) CBAM 대상품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지원내용)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S/W, H/W+검증) 보급 (지원범위) 시스템 및 계측인프라 구축, 보고서 검증 지원 (지원대상) 컨소시엄 40개 이내(컨소시엄당 최대 54백만원) - EU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희망)하는 중소기업과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솔루션 제공기업이 공동참여
한국환경공단	EU CBAM 대응 기업지원 컨설팅	(지원내용) 기업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EU CBAM 대응 교육, CBAM 대상 제품 배출량 산정 및 보고서 작성 관련 기술지원, 활용된 활동자료의 적절성 검토 (지원규모) 총 100개사를 선정하여 무료 컨설팅 수행(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컨설팅 수혜자는 중복신청 불가) (지원대상) EU CBAM 대상 품목 또는 관련 전구물질을 제조하는 공정을 보유하여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이 필요한 기업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설비투자비의 30~70% 지원) (지원한도)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 및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50%)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연간 60억원, 업체별 연간 100억원까지 지원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내용)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에 필요한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관리 설비개선·설치,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80개사 내외 선정) (지원대상) 국내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 및 중견기업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원내용) 녹색 혁신기술 보유 공급기업과 기술 수요기관 간 매칭을 통한 녹색기술의 개발·보급 촉진 및 기업의 환경경영 지원(수요기관 내 혁신설비를 제작·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지원) (지원규모) 컨소시엄당 최대 10억원 이내(17개 내외) (지원대상) 녹색 혁신기술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지원	(지원내용) 온실가스 인벤토리(산정체계) 구축 지원 및 배출량 확인서 발급(EU CBAM 대상 품목 수출기업 제품 단위 내재배출량 산정 시범 지원

		(인벤토리 구축 컨설팅 → 탄소 관리 기초교육 → ESG 경영 진단 → 감축 잠재량 도출 →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 발급 일괄지원) (지원대상) 국내외 탄소규제 및 ESG 등 지원이 필요한 산업체 40개사 내외 ※ 기존 사업 참여 업체는 금년도 사업 참여 희망 시 설비 변동 여부 검토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서 발급 예정
	온실가스·에너지 효율진단	(지원내용)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절감 방안의 발굴 및 투자활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토록 컨설팅 제공 (지원범위) 진단대상자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여 에너지이용 효율향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 (지원대상)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 이상 에너지다소 비업자(KEA는 주로 1만toe이상 대규모사업장 위주로 진단수행)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사적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컨설팅, 에너지사용의 실시간 계측·제어·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지원 (지원한도) 에너지 사용량별 지원한도내에서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40% 국고 지원 (지원대상)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중소·중견 사업장
	산업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사업장의 감축설비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설비비(물품), 시공비(공사)와 같이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된 설비설치비용 (지원한도) 정부보조금은 감축사업을 위한 지원 항목별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지원(중소기업 70% 이내,, 중견기업 50% 이내 지원) (지원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산업·전환부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중견기업
KOTRA	CBAM 대응 컨설팅 지원	(지원내용) • 주요국 공급망 규제 동향, 대응 사례 등 콘텐츠를 구성하여 맞춤형 정보 제공 • EU CBAM, 공급망실사 등 공급망 관련 정책제도 대응 및 핵심 원부자재 수급 안정화 방안 컨설팅 지원 (지원규모) 5개사 내외 (지원대상)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 및 원부자재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SG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내용) 직·간접 수출기업 대상 오염물질 배출 관리 중심의 친환경경영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전문 컨설팅 제공(①친환경공정 개선, ②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③ESG 교육 등 친환경경영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한도) 기업당 20백만원 수준 내 지원(현물지원이 아닌 컨설팅 지원 비용임)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직·간접 수출기업) 45개사 이내 - 환경부, 기술원과 ESG경영 관련 MOU를 체결한 협회·단체·기업에서 추천한 중소·중견기업 - 친환경경영 제고를 위한 친환경공정 개선,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중점으로 개선이 필요한 국내 제조분야 중소·중견기업

자료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정부지원사업을 한눈에, 2025.03.14)

FTA BRIEF



한국원산지정보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SSN 3022-7984